KOSHA GUIDE

C - 06 - 2015

- ⑤ 인력운반 구간의 바닥면 등에 돌출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도재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제거하고,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.
- ⑥ 자재를 인력운반 시에는 자재를 떨어뜨려 발 등에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운반하고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⑦ 타일박스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손이 타일박스와 바닥면에 끼일 우려 가 높으므로 적정 받침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(나) 리어카 등 운반용구를 이용한 자재운반 작업
- ① 리어카, 핸드카 등 운반용구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 시에는 사전에 각륜, 볼트 체결 상태, 용접 상태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운반 경로 상에는 돌출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고, 운반물은 운반 도중 이탈되지 않도록 로프 등을 이용하여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.
- ③ 리어카, 핸드카에는 자재의 과다 적재를 지양하고, 시야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엘리베이터, 리프트 등을 이용한 수직운반 시에는 개폐문의 턱이 없도록 조치하고, 회전을 고려한 적정 작업 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.

(다)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 작업

- ①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 시에는 지게차로 인한 충돌, 깔림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고,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지게차로 팔레트를 이용하여 타일을 운반 시에는 팔레트가 지게차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.
- ③ 지게차는 자격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.
- ④ 지게차 이용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하고, 신호수는 운 전원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신호하여야 한다.